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1월 23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7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는 2년 이내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